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47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정점식・이인선・서일준

김도읍 • 고동진 • 신성범

배준영 · 강명구 · 김정재

임이자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가 한국부동산원으로 대규모 이관되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정위원회 2개소만을 운영하고 있고, 두 기관이 업무를 분리 운영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처리와 업무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에서 삭제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2020. 12. 10.)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정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1항).

법률 제 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 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	위원회) ①
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	
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u>지부,</u>	<u>지부</u>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한국부동산원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	
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	
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